

“이 땅에 할아버지 묘지·내 호적도 있는데…”

‘국적회복’ 나선 中동포

⑤ ‘강제출국’ 안타까운 사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중국동포들이 ‘고향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시키고 있는 동안 재판소 밖에선 50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은 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시작한 노래가 커다란 울림이 돼 퍼지면서 이들이 한 민족임을 실감케 했다.

● “우리 조국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할아버지 묘지도 있고, 내 호적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왜 제가 이 땅에서 쫓겨나야 할까.” 새문안교회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자연(가명·55·여)씨는 두 손을 꼬옥 모아 전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 온지 6년이 됐지만 그동안 모은 3000만원은 얼마전 사기를 당해 다 날려버렸다. 그는 “쫓겨날 상황에서 단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우리는 아픈 역사의 희생자일 뿐 조국이 싫어 떠난 사람들이 아닌 만큼 무조건 불법체류자라는 굴레로 억지 말아달라.”며 하소연했다.

5살 때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간 이형상(64)씨는 “우리 동포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 땅에서 수십년간 이방인이라는 눈총을 견디며 풀뿌리처럼 살다 어렵게 찾아왔는데 조국마저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기 모인 사람 중 조국 땅 싫어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딱한 처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극한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17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 중국동포는 ‘고향땅에 살 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이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중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일 뿐’이란 법을 논리와 ‘고향에 왕래하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라는 역사성을 강조한 주장이 평평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현주소와 역사적 배경, 해법 등을 살펴본다.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동포들이 이 땅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정대화 변호사는 “재중동포의 국적문제는 단순히 헌법적인 차원을 넘어 일제 강점기의 수탈을 피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한민족의 역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중국동포들이 자신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이들이 국적을 취득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독일이 통일 후 유럽 각지에

모(38)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성민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돈도 모아 함께 이씨의 고향인 라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살자던 부부의 약속은 이내 남편의 외도로 무참히 깨져 버렸다. 지난 8월 한국 여자가 생긴 남편은 이후 이씨를 폭행하고 아들 성민이마저 빼앗아갔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열을 남짓만에 아들을 되찾았지만 모자(母子)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17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이씨는 아들을 남겨둔 채 강제출국을 당하고 호적법에 따라 성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혼한 어머니를 찾아 연변(延邊)을 떠나 한국에 온 현아(가명·14·여)는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다. 미성년자인 불법체류자들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강제출국은 피할 수 있다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아는 지난 2000년 방학을 맞아 한국 남자와 재혼한 어머니 김선숙(35)씨를 만나러 왔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학교장의 배려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입학은 했지만 1학년 1년 동안은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청강생 자격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서울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선희 소장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다는 애매한 조항에 따라 현아와 같은 미성년 불법체류자 역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유지해기자 whoami@

중서도 이방인 눈총... 어렵게 조국 찾아 “고향서 살고 싶은 사람 ‘불법체류자’ 웬말”

흠어져 살고 있는 100만명 이상의 독일인들에게 국적회복을 해준 만큼 우리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중동포의 국적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일제단속에 생이별의 아픔도

불법체류자라는 족쇄 때문에 일제단속이 시작되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중국동포들도 적지 않다. 이종일(32·여)씨는 요즘 아들 성민(가명·3) 때문에 외출을 할 수도 없다. 세상밖에 안되는 아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밖에 나가면 경찰아저씨가 엄마 잡아가.”라며 엄마의 다리를 잡고 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가 한국에 온 것은 6년 전.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인인 장



“국적회복” 헌법소원서 제출 중국동포 대표단이 14일 중국동포국적회복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려 하자 50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1860년대 ~ 광복직전까지 가난·日帝탄압에 조국 떠나

■ 190만 中동포 이주 역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 동포는 190여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를 떠난 이주민의 후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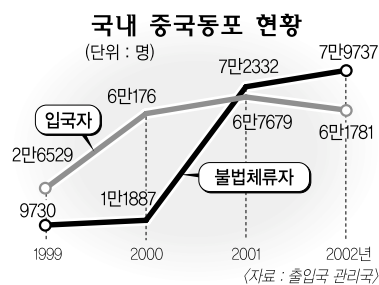
주로 ‘동북 3성’으로 불리는 라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이징, 톈진, 신장,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전역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다.

● 첫 이주는 1860년 베이징조약 직후 재중 동포 이주는 크게 3기로 나뉜다.

1기는 19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로 대부분 가난과 탐관오리들의 폭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넜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2기에는 항일운동을 위한 정치적 망명이 주를 이뤘다.

3기는 45년 해방까지의 시기로 당시



일본은 일본인을 조선으로, 조선인을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시키는 환위 이민(換位移民) 정책에 따라 대규모 강제이주를 실시했다.

1기 이민은 1860년 베이징조약 체결 직후에 이뤄졌다.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청조의 발상지인 만주지방에 대한 ‘봉급정책’을 풀고 주민들을 국경지대로 이주시켰다. 그러자 조선의 할벗은 농민들도 비옥한 미개척지를 향해 강을 건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청의 관헌들로부터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1880년대 청 조정의 간도개척을 위해 조선족 포용정책을 펼치면서 간도지방 곳곳에 조선족 마을이 생겨났다.

학계에서는 이 시기부터 한·일합병 직전까지 20여만명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한·일합병 직전까지 20만명 이주

일제의 한국침략이 노골화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19년 3·1운동 전후까지는 주로 항일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이 많았다. 국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던 홍범도, 유인석, 이범윤 등이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전후에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획 이민’이 활발했다. 이상설, 이동녕, 안창호, 박은식, 신채호 등이 이 시기 만주에 정착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만주지방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대규모 개벌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황무지였던 이곳에 조선 농민의 집단이주를 추진, 38년 처음으로 간도와 라오닝지방에 조선인들이 정착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 후에는 전쟁 물자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개척이민단’이란 이름으로 조선인 농민들을 강제이주시켰다. 이세영기자 sylee@

국적회복 거부는 평등권 위배

■ 이은규 서울조선족교회목사

“중국동포들에게도 조국에서 살 권리를 주십시오.”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 이은규(사진·43) 목사는 “중국동포들은 우리 나라에서 단순히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적회복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중국동포 대부분은 일제 시대에 독립 운동이나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라면서 “해방 후 북한에 들어



선 김일성 정권 때문에 귀국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어 “1948년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 한국 국민이 됐지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서 ‘국제 미아’가 된 중국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며 이번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국동

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법무부에 대해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을 당시 국내법 효력을 갖는 ‘재중동포의 지위에 대한 협정’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는 만들어야 할 법을 안 만든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같은 동포의 국적선택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위배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양산한 중국동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책임방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목사는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도 중국동포 문제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두걸기자 douzil@

기획



출국시킨 넘긴 조선족들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출국에 항의하며 지난 14일부터 단식 중인 중국 동포들이 16일 서울 구로구 조선족교회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예배를 보고 있다. 조선족 동포 5000여명은 현재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출해놓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한국서 살기보다 돈 벌고 싶을것”

‘국적회복’나선 中동포

④ 中현지 조선족 4명 좌담회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조선족들에게 불법 체류는 ‘코리아드림’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에서보다 한달에 20배 가까이 돈을 버는 ‘한국행’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어떠한 모험도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엄청난 ‘유혹’이다.

중국 소수민족으로 갖은 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조선족들의 한국행 배경에는 한국에서 ‘목돈’을 만들어 중국에서 인간답게 살겠다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극소수 산업연수생 이외에 취업 비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 근로자의 10년치 봉급과 맞먹는 7만(1050만원)~8만위안(12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라도 불법적인 한국행을 선택한다.

대한매일은 불법체류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했던 중국 조선족들과 긴급 좌담을 갖고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코리아드림’의 전모를 살펴봤다.

참석자는 조선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린(吉林)성 출신의 김영도(金永道·54), 송동해(宋東海), 이형식(李炯植·51), 김선광(金善光·50)씨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체류 경험이 있거나 가족들이 불

법체류 상태로 있다.

▶최근 조선족들이 집단으로 국적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김영도 중국 국적을 버리면 중국에 있는 토지가 몰수되고 자식들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마 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들의 90%는 진정으로 한국에 살기보다 자유롭게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일 것이다. 지금은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단속하니가 열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경제활동의 문호를 보다 확대해줄기를 기대한다.

●송동해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중국 내 한족(漢族)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다. 굳이 ‘한 핏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한족들에게 치이고 마음의 조국이라는 한국에서도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김선광 조선족들은 심지어 북한 사람만도 못하다.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가면 정착금으로 3000만원이나 받고 대우도 좋는데 우리 조선족들은 불법체류라는 약점이 잡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보람은 있는가.

●김영도 91년부터 97년 IMF사태 직전까지만 6년간을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통해 돈을 벌었다. 나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아내는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푼두푼 저축했다. 97년 중국에 돌아올 때 100만위안(1억 5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를 밀친삼아 베이징에서 식당을 차려 지금은 집이 세 채가 됐다.

●송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정도 아내와 불법체류를 하면서 40만위안(6000만원) 정도를 손에 쥐었다. 지금은 한 10개월 정도 사업

을 모색하면서 쉬고 있다. 아내는 월 80만원 정도 벌었고 나는 150만원 선이다. 지금은 베이징에서 식당을 하려고 물색 중이다.

●이형식 2년반 전에 아내가 가서 지금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진황도 복장회사에 근무하던 아내가 산업시찰로 가서 그곳에 눌러앉았다. 식당에서 13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초기에 두 달 정도 아파서 3만위안(450만원)을 썼다. 2년 정도 지나 분전을 뽑은 상태다.

▶불법체류자들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은 어떤지.

●김영도 예멘지역이나 베이징 등 조선족들이 사는 곳에는 브로커들과의 연계망을 갖고 있다. 조선족 1명이 한국에 가려면 대략적으로 7만(1050만원)~8만위안(1200만원)이 든다. 전문 브로커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국행은 불가능하다.

중국 시골에서는 한달 임금이 500위안 안팎이다. 브로커들에게 주는 돈은 중국 근로자들의 10년치 월급과 비슷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근로자의 99%가 이런 거액의 돈을 주고 한국에 간다.

●이 전문적으로 분업화돼 있다. 내 고향의 한 사람은 2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브로커에게 8만위안을 줬다. 한국에 연계망을 갖고 있는 브로커가 5만위안을 챙기고 비행기 값이나 부대비용 등 경비가 2만위안 정도 든다. 중간에서 조선족을 소개한 사람은 1만위안 정도를 챙긴다. 보통 1년3~4개월을 고박 일해야 브로커들에게 준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벌러 간 조선족들이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거액의 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송 조선족들의 80~90%는 이자를 주고 돈

을 빌린다. 이자가 싼 은행돈은 생각도 못한다. 보통 같은 마을의 한족(漢族)들에게 연리 30~40%로 돈을 빌린다. ‘재주는 조선족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한족)이 챙긴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7만위안을 빌리면 1년 이자만 해도 2만~3만위안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쫓겨나면 다시는 못오기 때문에 죽자살자 도망다니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나갔다가 1년 안에 붙잡혀 오면 하늘이 노랗게 된다.

▶불법체류 때문에 조선족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김영도 한국에 갔다가 1년도 안돼 단속에 걸려 중국으로 쫓겨나면 그 집안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 한다. 원금은 고사하고 30~40%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중팔구 또 빚을 내서 불법체류의 길을 찾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준다.

●송 보통 부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조선족 남자는 술과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을 탕진하는 사례가 흔하다. 한국에 한번 가면 5년은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은 깨진 상태가 된다. 한국에 1년 이상 있으면 사실상 이혼상태가 된다. 남자, 여자 모두 단 살림을 차리고 자식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에서 조선족들의 위치는 날로 떨어질 것이다.

●김선광 일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조선족 젊은이들은 경마에 빠져 있거나 술로 돈을 탕진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월급날만 되면 근처 술집아가씨들이 기다렸다가 월급을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oilman@

“조선족 출입국 개방해야”

■ 정인갑 칭화대교수 인터뷰

【베이징 오일만특파원】“한국정부의 조선족 정책은 불법체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중간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칭화(淸華)대 객원교수이자 베이징시 삼강학교 교장인 정인갑(鄭仁甲·사진) 교수는 일부 조선족들의 국적 회복 운동에 대해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근로활동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한국에서 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10년치 봉급에 육박하는 7만(1050만원)~8만위안(1200만원)을 브로커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불법체류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부 조선족들의 국적 회복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내 조선족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조선족의 본질과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중국 조선족들은 냉전체제의 희생자들이다.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만 없어도 3분의2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사람들이다.

오히려 조선족자치구 성립과 동시에 조선족 대부분은 중국인이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귀화 신청서를 강제로 쓰게 했고 이에 반대했던 조선족들은 모두 숙청되거나 탄광으로 쫓겨갔다. 본인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중국인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조선족들이 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조선족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사태는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국 조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며 중국에 돌아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기질 상 상당히 중국화됐다.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한국이 좋다고 하지만 5년이나 10년후 중국이 살기 좋아지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에 가라고 해도 안갈 것이다.

물가와 생활비, 학비 등 생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강연을 통해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대해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고 갈팡질팡하면 한국 사

람들도 조선족들을 얽잡아 보고 중국에서는 의붓자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감정적 접근보다는 한국과 조선족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입출국이 너무 어려워 한번 한국 땅을 밟으면 ‘목돈’을 쥐기 전에는 절대 중국에 안 온다.

하지만 한국에 다시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장 5만명 정도는 중국에 있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보기 위해서라도 귀국할 것이다.

조선족들에게 문호가 개방되면 당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인력 공급이 급증해 한달 평균 1만위안(150만원) 안

팍의 임금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이 모진 고통을 겪으며 버틸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인간은 10배의 이익만 보여도 단두대에 오

르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처럼 조선족들에게 20배의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불법체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신세대들의 의식 변화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만주로 넘어온 1세대와 직계 자손인 2~3세대들은 중국에서 손해를 보면서 한국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의 4세대들은 미련을 갖지 않고 있다. 조선족들도 세대교체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 중국에 발을 붙이고 뿌리를 박고 이 나라에서 신용을 얻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조선족들의 입출국을 개방하면 당장 혼란이 클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조선족들도 7만~8만위안의 거액을 브로커들에게 빼앗기지 않아 한국 체류 시간을 단축할 것이고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갖게 된다.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료는 물론 선물로 사가는 한국 제품 구입 비용으로 한국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조선족들은 브로커 비용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평균 1년3개월을 일해야 한다. 브로커들의 활동 여지를 없애야 한다. 60년대 중국에서도 암시장에서 거래됐던 쌀값이 양성화되자 2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



사람과 사회

말말말... 일제가 총칼로 날조해 낸 불법 무효한 침략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합법성을 운운하며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조선침략 죄행을 묻어두면 물어둘수록 조일관계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 북한 노동신문, 을사보호조약 체결일(17일)을 맞아 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숨고... 쫓고...

불법체류 단속 첫날... 식당 주인들 일손 없어 '발동동'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 첫날인 17일 불법체류자와 단속반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이어졌다. 단속 현장에서는 하루종일 하소연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 **옥탑방 기습... 옷가지·사진만 덩그러니**

이날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오류역 주변 여관밀집지역. 합동단속반원 30여명이 들이닥쳤다. 시 외곽부터 뒤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단속반이 E모텔 옥탑방으로 올라갔지만 방에는 가족사진과 중국제 약, 옷가지들만 남아 있었다. 모텔 주인 양모(58·여)씨는 "일하던 종원업이 놔두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속반원들은 의심이 가지지 않았지만 "영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비슷한 시간 서초·강남·동작구를 맡은 합동단속반 4반 소속 6명은 강남구 신사동 주변 식당들을 뒤졌다. 탐문 끝에 한 삼겹살 집에서 지난해 2월 입국한 이모(39·여)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고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었지만 위장결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졌다.

이어 한 설렁탕집에서 2000년에 입국했다는 중국 동포 강모(21)·이모(31)씨가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업체와 실제 일하는 곳이 달랐다. 이들은 "전에 일하던 곳의 형편이 어려워 이 달초 옮겼다."면서 "근무장소를 바꾸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 **절박함 하소연·탄식... 음독자살 기도도**

낮 12시쯤 경기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러시아인 클라우디아(50·여)가 안산역 앞에서 인천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검문에 걸린 것. 그는 호송차에 실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로 옮겨졌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차승만 소장은 "강제로 잡혀가면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처럼 무차별로 잡아간다면 죽음의 사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1년 입국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김모(25)씨는 최근 이혼 당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자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 14일 밤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상인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크게 올랐으며 울상을 지었다. 신사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민자(44·여)씨는 "인건비가 크게 올라 생활정보지에 한달에 130만~1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연락이 안온다."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도 고용하려고 아르바이트생 4~5명이 살 수 있는 전셋집을 1억원을 주고 구해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단 외국인노동자 31명과 고용주 5명 등 모두 36명이 붙잡혔다.

● **단식농성 중국동포 탈진자 속출**

중국동포 3000여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 8개 교회에 나뉘어 나흘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농성 중이던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 문분선(57)씨 등 7명은 탈진, 병원으로 실려갔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은 명동성당 입구에서 사흘째 농성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5일까지 단속대상 2만 3441명이 자진출국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들어 출국자가 늘어 단속대상자는 10만명 정도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 이유종기자 kbchul@

중동포 국적회복 논란 가열

“재외동포법 차별적” VS “강제퇴거 회피 목적”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17일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조선교회와 재외동포법 개정 특별위원회 등은 최근 '조선족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농성중이다. 반면 법무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이날 "헌법소원 등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현행 재외동포법 등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중인 중국동포에 한해 국적신청 자격

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일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미 2차례 1년 시한을 줬고 3차례 유예 조치를 했다."면서 "중국정부가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법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합동법률사무소의 정지석(43) 변호사는 "국적법에는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해방 당시 영토 밖의 사람들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

다."면서 "정부수립 당시 단지 국교가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취득 절차를 밟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법대 노영돈 교수는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체류자격을 부여해 사실상 국적취득을 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귀옥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재외동포법을 고쳐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폭넓은 경제·문화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적회복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특별영주권 등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12월 마련된 재외동포법은 2조2항에서 재외동포를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동포에서 배제하고 있다.

구혜영 안동환기자 koohy@



울부짖는 中동포 불법체류자 단속 첫날인 17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에서 단속반원에 붙잡힌 한 중국동포 여인이 경찰 버스에 앉아 울부짖고 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과 결혼한 한국인 사위가 딸의 가출사실에 양심을 품고 신고해 단속반에 붙잡혔다. 안주영기자 yja@

혼자선 못 죽겠다?